

# 초처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초처초등학교 학부모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초처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행복과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부모회의 자치역량 발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회는 회칙 제6조에 따른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 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
- ③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④ 그 밖에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5조 (규정준용) 본회는 전라북도교육청 규정을 준수하고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제6조 (자격) 회원은 초처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모든 학부모로 하며, 학부모라 함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①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의 활동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권리
- ② 본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 ③ 본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① 아이들을 위해 봉사할 의무
- ②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 ③ 본 회의 회칙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
- ④ 본 회에서 시행하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9조 (상실) 초저초등학교 학부모가 아닌 날로부터 회원 자격은 상실된다.

### 제 3 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회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제10조 (직무 및 의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구성방법)

- ①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결원 시 재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기)

- ① 선출일 다음 날로부터 다음 회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② 학생의 졸업인 경우는 졸업식까지 자격을 유지하며, 재선출의 경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제 4장 회의

제13조 (총회)

- ①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부모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본 회 활동 계획 수립
  2. 본 회 규정 제·개정 사항
  3.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본 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본 회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 권고한다.

## 제 5 장 재정과 해산

제15조 (재정지원 등)

- ① 본 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단체의 후원금 등으로 한다.
- ②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③ 본 회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해산)

-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본 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 ② 본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본 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본 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7조 (청산)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 (회칙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시행) 이 규정은 본 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023. ○. ○.)